

「 참 고 자 료 」

[참고 1] 정 관 (부칙 제2조 관련)

민 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0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참고 2] 사무총국관리규정 (제3조 관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2006. 9. 6. 대통령령 제1967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개정 1998.12.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 제 <2005. 6. 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제13155호, 1990.11.5>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9호, 1998.12.18>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3호, 2005.6.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제19674호, 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3] 무선국관리규정 각 조문관련

(제2조 관련) / 전파법 시행령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1.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0. 12. 31.]

(제3조 관련) / 전파법 시행령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①법 제70조의 제1항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받으려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0. 12. 31., 2013. 3. 23., 2017.7.26.>

(제4조 관련) / 전파법 시행령

제31조 (허가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2.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법 제20조제1항제1호

-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 · 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2017. 7.26. >
1.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2.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 · 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지구국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4. 사용지역 · 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소규모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으로서 같은 무선국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 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2014. 8. 27., 2014. 12. 3., 2017. 7. 26.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 법인의 대표자 · 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 관련) / 전파법 시행령

제31조(허가의 신청)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1. 무선국의 목적
 2.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3.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간이무선국이 같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안테나공급전력
 7. 안테나의 형식 · 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8. 운용허용시간
 9.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10. 무선기기의 대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무선기기는 제외한다)
-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 나.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 · 운용하는 무선국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7. 소규모의 무선국으로서 사용지역 · 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

(제6조 관련) / 전파법 시행령

제38조 (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 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6. 6. 21., 2017. 7. 26.>

1. 전파의 형식 ·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안테나공급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안테나의 형식 · 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참고 4] 사업관리규정 (제29조 관련)

전파법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2.]

[참 고5] MORSE 전신기능 인정규정/제3장 해설

(제10조제3항 관련) / 참가자의 자격

※ 반드시 지역본부에서 1차(예선) 선발대회에서 다수의 참가자 중 자유경쟁을 거쳐 선발된 인원 중에서, 2차(본선) 선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최종 선발의 테스트를 거쳐 참가 선수로서의 확정이 되도록 명문화 함

(제12조제1항제7호 관련) / 테스트의 방법

※ DL3DZZ에 의해 편집한 RUFZ를 콜사인 수신프로그램으로 된 아마추어 무선 실기테스트의 경기)

(제12조제1항제8호 관련) / 테스트의 방법

※ JE3MAS에 의해 제작된 PED 프로그램으로 Pile-Up 수신 실기 테스트 경기

(제13조 관련)/IARU의 HST세계선수권대회 규정

1. 메시지의 수신

- 가. 경기자는 손으로 또는 타이프라이터(수동 또는 전동)나 PC를 사용하여 수신한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26개의 라틴문자로 하고 숫자는 10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한다. 문자와 숫자에 추가하여 혼합메시지에는 . , ? / = 등의 기호가 있다. 서로 근접하는 그룹에는 같은 부호를 3개 이상 넣어서는 안 된다.
- 나. 경기자는 테스트를 한 번 이상 받을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 테스트를 받도록 허가한다.
 - 1) AC 콘센트의 불량
 - 2) 송신설비의 불량
- 다. 테스트는 최후의 경기자가 수신할 수 없을 때까지 송신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의 각 테스트 스피드는 1분당 10부호의 단계 까지 올리는 것으로 한다. 이 송신 스피드는 PARIS 시스템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한다.
- 라. 신호음은 700~900Hz 이내로 한다. 저항이 1600~2000Ω의 헤드폰을 주관처가 제공토록 하며, 신호음량을 조절하는 가능성도 명기하도록 한다. 경기자는 위의 저항에 맞으면 자기 헤드폰을 사용해도 된다.
- 마. 모든 경기자는 최저의 스피드로부터 시작한다. 스피드가 경기자에게 너무 빠르면 다른 경기자가 수신을 종료할 때까지 또는 감독관이 다른 결정을 내릴때까지 그대로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 바. 경기자를 그 기능레벨에 맞추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경기자를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타이프라이터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수신할 경기자는 특별실에 들어가도록 한다.
- 사. 경기자는 문자메시지의 수신을 시작하여, 숫자메시지와 혼합텍스트 메시지의 수신을 계속한다.
- 아. 경기자는 수신한 메시지를 손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호를 사용해도 좋으며, 기록하기 위해 자

- 기가 준비한 종이를 사용해도 좋다.
이 초안은 감독관이 배포한 정식서식에 옮겨 쓰도록 하며, 옮겨 쓴 메시지는 라틴문자의 대문자로 기입하고 원본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자. 각 테스트가 끝나면서 갖는 30분의 휴게시간은 경기가 순으로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세 개의 선택된 메시지를 각 종류의 메시지 중 땐 것과 비교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메시지 하나만을 카운트한다. 테스트는 각 행에 5개의 그룹으로 옮겨 쓴다.
- 차. 각 테스트가 끝난 후 10분의 휴식은 경기가 수신에 타이프라이터를 사용했을 경우 각 종류에서 3개의 양호한 메시지를 선택, 분류하여 서명하도록 한다. 메시지를 한 번에 수신했을 경우, 펜으로 그룹을 나눈다. 행의 그룹 수에는 제한이 없다.
- 카. 각 메시지의 앞에는 다음을 붙인다.
- 1) 문자메시지 : ooooo(OSCAR), 송신 스피드, \VV와 =
 - 2) 기호메시지 : 00000(ZERO), 송신 스피드, \VV와 =
 - 3) 각 메시지는 AR로써 종료한다.
- 예) ooooo100\VV=메시지 테스트 AR, 00000
110 \VV=메시지 테스트 AR 등.
- 타. 연습 메시지는 최초의 경기메시지 앞에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파. 수신 메시지는 오자(誤字)의 수가 5개를 초과하지 않을 때 등급으로 분류한다.
- 메시지를 수신 할 때 다음의 것은 誤字로 본다.
- 예) 컨트를 메시지 - 12345 67890 34789 25371
수신 메시지 - 12245 678903 37489 531
오자 그룹 1 - 1개
그룹 2 - 1개
그룹 3 - 2개
그룹 4 - 2개
- 하. 점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1) 자기 부문에서 최고의 스피드로 분류된 메시지(문자, 숫자 및 혼합)를 수신한 경기자에게 100점을 준다. 그 보다 늦은 스피드로 메시지를 수신한 경기자는 그 자연에 따른 점수를 준다.
예) 분류된 메시지의 최고 수신 속도가 1분당 260부호라면 100점을 준다. 같은 부문의 경기자가 1분당 210부호로 수신을 하면 그 경기자의 점수는 80.80이 된다.
(210:260X100) 점수는 소수점이하 한 자리 수로 한다.
 - 2) 분류된 메시지(파. 참조)의 수신에려는 위 계산된 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 여기에 따라 최종 점수가 결정된다.
- 3) 주최 측이 메시지 수신의 분류를 한 결과 두 사람 이상의 경기자의 합계 점수가 동점일 경우, 그 순위는 혼합테스트 메시지의 수신 결과에 의한다.
- ## 2. 메시지의 송신
- 가. 일반키 또는 전자키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경기자는 일반키 또는 전자키로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단일처리 또는 이중처리 전자키 (Double Manipulated Electronic key)를 사용할 수도 있다. 경기자가 사용하는 전자키는 1:3비율로 단점과 장점의 신호가 발신되어야만 한다.
- 나. 송신용 메시지의 테스트는 50개의 그룹으로 구성한다.
- 다. 송신용 메시지의 테스트는 라틴문자의 대문자 및 /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써 1행에 5그룹단위로 인쇄한다. 문자간의 간격은 1문자의 크기로 하고, 행간의 간격은 1행의 크기로 한다.
- 예)
- ABVGD FYVAK NGQZH IMSTL JNUCE
ADRG0 MAKUV TLQNY JOAIZ UZGIT
or
12345 67890 61360 76392 73652
23489 83641 78032 23725 89345
or
DX?/1 HG4B/ X.6B= '?=MBG 43A/=
,7L.8 Z?43Q O0L/. A,X3 KF48/
- 라. 3개(문자, 숫자, 혼합)의 메시지가 경기직전에 전 경기자에게 제시되도록 한다. 컨트를 송신메시지의 인쇄타입을 나타내는 연습 메시지는 경기 1일 전에 전 경기자에게 제공된다.
- 마. 경기자는 3개의 메시지(문자, 숫자, 혼합)를 송신하는데 10분을 준다. 이 10분은 경기자가 방에 들어오는 시점으로부터 기록된다. 1분의 송신시간은 감독관의 개시 신호로부터 기록된다.
- 감독관이 호출한 경기자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송신시간이 시작된 시간의 1분 30초 후에 다시 경기자를 호출하도록 한다. 경기자는 10분 이내라면 언제라도 송신을 개시할 수 있다.
- 그러나 송신시간이 지나면 곧 송신을 중지시키고 끝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
- 바. 경기자가 자기의 키를 접속한 후에는 트레이너의 원조는 일체 받지 못한다.
- 사. 각 테스트는 시간에 맞는 평가로서 한 번 밖에 시도할 수 없다. (4. 참조)
- 아. 경기자는 메시지를 송신하기 전에 자기의 개시번호, \VV와 =을 먼저 송신한다.

예) 12 VW = 메시지 텍스트

시간의 기록은 분리부호가 송신된 후에 시작

다. 1분 후에 감독관이 송신을 중지시킨다.

감독관이 VW 및 분리부호로부터 경기자의 송신메시지를 감독한다.

자. 송신한 메시지는 오신(誤信)의 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고 정정의 수가 1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분류한다. 메시지를 송신할 때 다음의 것은 오자로 본다.

1) 규정된 이외의 부호를 송신하는 것.

2) 부호의 탈자 (부족)

3) 그룹 안의 부호가 역으로 된 경우

4) 정규적인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에러 사인을 보내는 것. (에러는 정정으로 분류한다).

메시지 내에서 오자를 정정할 때에는 오자사인 (적어도 점을 8개 연속)을 송신한다. 그 후 경기자는 오자가 발생한 그룹전체를 다시 송신해야 한다. 경기자가 어떤 한 그룹만을 다시 반복할 경우 그것은 오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자. 메시지 송신의 감독은 간단히 행한다. 감독관과 경기자를 서로 다른 방에 배치한다. 경기자가 키를 접속할 때 도와주고, 각 테스트의 시간과 경기전체를 감독하는 감독관은 경기자와 가깝게 위치한다. 송신은 감독을 위해 녹음기에 녹음하도록 한다.

카. 5명의 감독관이 메시지를 송신하는 동안 송신한 부호와 오자의 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상하의 산출점수를 빼고 나머지 3명의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점수를 기록하는 감독관은 시니어 감독관으로 임명한다.

타. 다음과 같이 점수를 계산한다. 자기부문에서 최고의 스피드로 분류된 메시지(문자, 숫자, 혼합)를 송신한 경기자에게 100점을 준다. 그보다 늦은 스피드로 메시지를 송신한 경기자에게는 그 “지연”에 따른 점수가 주어진다.

예) 문자메시지의 최고 송신 속도가 1분당 230부호라면 100점을 준다.

같은 부문의 경기자가 1분당 180부호의 스피드로 메시지를 송신하면, 그 경기자의 점수는 78.2점이 된다.

(180:230X100)이 테스트에 관하여 경기자에게는 0.9의 승수가 주는 최종점수는 78.2X0.9로써 73.8점이 된다. 점수는 소수점 이하 1까지로 한다. 송신에러와 정정의 수에 따라 승수는 5의 표에 의거 감정된다.

파. 주최 측이 메시지 송신의 분류를 할 때에 두 사람 이상의 경기자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때 그 순위는 혼합테스트 메시지의 송신결과에 의한다.

3. 아마추어 무선 테스트

DL3DZZ에 의한 RUFZ호출부호 프로그램에 의한 이 테스트는 PC타입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고, 적어도 한 사람의 감독관이 입회해야 성립된다.

경기자는 50개의 호출부호를 수신하는 경기를 2회 시행하여 결과가 좋은 쪽을 택한다.

호출부호를 등록할 때 경기자는 테스트의 일련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

예) 제 1 회 시기 HA3NU/1

제 2 회 시기 HA3NU/2

경기자는 자기의 호출부호가 아닌 테스트 장소에서 선택된 호출부호로써 경기를 한다. 이 테스트에 수대의 컴퓨터가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의 성능이 전부 같은 컴퓨터로 한다. (예를 들면 클럭, CPU 등) 최고의 경기자는 이 테스트로 100점을 얻을 수가 있고, 경기자는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낮게 된다.

예) 최고의 경기자가 이 테스트에서 31.225점을 얻어 100점이 주어진다. 다른 경기자가 30.110점이 되면 그 경기자의 점수는 30.110:31.225X100의 계산으로 96.4다. 점수는 소수점이하 1까지 기록한다. 둘 이상 경기자의 점수가 동점일 때의 순위는 나쁜 쪽의 시기에서의 최고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4. 송신테스트의 시간 평가

에러 3건 혹은 정정 10회의 제한을 초과한 경기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초과한 최초의 오신(4번째 에러) 혹은 정정(11번째의 정정)이 발생할 때까지 경기자가 송신한 메시지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예1) 어떤 경기자가 1분당 210부호의 스피드로 송신하여 47초에 4번째의 오신을 범했을 때(정정은 7회) 이 시점까지 그 경기자의 170개의 부호를 송신했다. 1분당 170부호로 결정하고 0.7의 승수가 주어진다.

예2) 어떤 경기자가 1분당 210부호의 스피드로 송신하여 47초에 11번째의 정정을 했다.(오신1건) 이 시점까지 그 경기자는 170부호를 송신했다. 따라서 그 경기자의 스피드는 정정 10회 오신 1회로 1분당 170부호로 결정, 0.6의 승수가 주어진다.

오신	0	1	1	2	2	3	3	3	3
정정	1	2	3	4	5	6	7	8	10
승수	1	0.95	0.9	0.85	0.8	0.75	0.7	0.65	0.6

참고 : 부호 1그룹간의 간격을 두지않고, 규칙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송신했을 경우 승수는 0.1을 뺀다.

예) 송신메시지 0에러 3정정 승수 0.9

3에러 8정정 승수 0.65

3에러 4정정 승수 0.85

[민법/사단법인체 편]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좋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설립의 조건에 좋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특실에 관한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전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1.12.29]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리)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 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

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 사원의 5분의 10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 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 (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 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주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

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별칙

제97조 (별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 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

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